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30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이헌승·김 건·박성훈

서일준 · 임이자 · 윤상현

송석준 • 박덕흠 • 김소희

김정재 · 서범수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 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 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획자"라 한다),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투자회사"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 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 창업기획자(이하 이 조에서 "창 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업기획자"라 한다). 벤처투자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 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 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는 경우에는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기획자, 벤처투자회사-----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열회사가 아닌 <u>벤처투자회</u>
 산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자회사인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u>벤처투자회</u> 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시
(0)	/ III O II	11	

1.	 <u>창업기획</u> <u>자, 벤처투자회사</u>
	 <u>창업기획자, 벤처투</u>
	<u>자회사</u>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3)

가 주식을 소유한 <u>벤처투자회</u> 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6.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u>창업기획자,</u>
벤처투자회사
1. (현행과 같음)
2.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
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
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u>3.</u> ~ <u>7.</u> (현행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4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5)

변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 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 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